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5년06월26일
(11) 등록번호 10-1522559
(24) 등록일자 2015년05월18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Q 30/02 (2012.01) G06Q 30/06 (2012.01)
(21) 출원번호 10-2013-0052084
(22) 출원일자 2013년05월08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5월08일
(65) 공개번호 10-2014-0132888
(43) 공개일자 2014년11월19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80017178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김중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6가길 54 (중곡동)
(72) 발명자
김중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6가길 54 (중곡동)
(74) 대리인
특허법인주원

전체 청구항 수 : 총 12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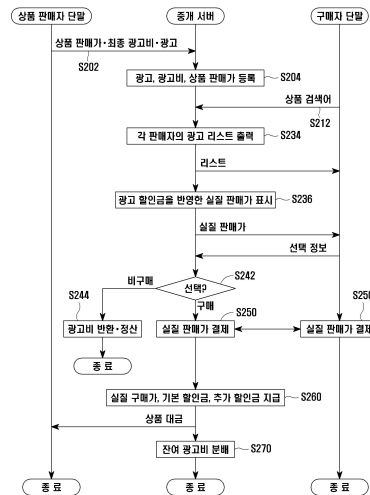
심사관 : 이충근

(54) 발명의 명칭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 및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 및 시스템을 공개한다. 본 발명은 상품을 검색한 구매자가 실제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광고비가 지급되도록 구현함으로써,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광고를 행하는 경우 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타겟 광고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판매자들로 하여금 광고 비용을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구매자는 판매자들이 지급한 광고비의 일정 비율만큼 상품 가격에서 할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되, 보다 많은 광고비를 지불한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보다 많은 할인금을 받도록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판매자들로 하여금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구매자는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대표도 - 도2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전자 상거래 중개 서버에서 수행되는 전자상거래 중개 방법으로서,

(a) 복수의 상품 판매자 단말들로부터 각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수신하고, 기본 광고비와 추가 광고비를 포함하는 최종 광고비를 지불받는 단계;

(c) 구매자 단말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면, 해당 검색어에 대응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설정한 광고를 상기 구매자 단말로 출력하는 단계;

(d) 상기 구매자 단말에 광고가 출력된 모든 판매자들이 제공한 기본 광고비의 합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기본 할인금)과, 각 판매자의 추가 광고비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추가 할인금)을 합산한 광고비 할인금을 반영한 각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격을 상기 구매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및

(e) 상기 실질 판매 가격에 따라서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상품 구매 대금을 결제받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a) 단계와 상기 (c) 단계 사이에

(b) 구매자가 상기 (a) 단계에서 사용자가 검색한 상품에 대해서 사전에 설정된 보증금으로 선결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c) 내지 (e) 단계는 보증금을 선결제한 구매자에 대해서만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구매자 단말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f) 상기 상품 판매자 단말들이 지급한 최종 광고비를 상품 판매자들에게 분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구매자 단말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f) 상기 상품 판매자 단말들이 설정한 최종 광고비를 상품 판매자들에게 분배하고, 상기 보증금을 각 상품 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의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f) 상기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에서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모든 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

청구항 5

전자 상거래 중개 서버에서 수행되는 전자상거래 중개 방법으로서,

(a) 복수의 상품 판매자 단말들로부터 각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수신하고, 기본 광고비와 추가 광고비를 포함하는 최종 광고비를 지불받는 단계;

(c) 구매자 단말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면, 해당 검색어에 대응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설정한 광고를

상기 구매자 단말로 출력하는 단계;

(d) 상기 구매자 단말에 광고가 출력된 모든 판매자들이 제공한 기본 광고비의 합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기본 할인금)과, 각 판매자의 추가 광고비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추가 할인금)을 합산한 광고비 할인금을 반영한 각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격을 상기 구매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e) 상기 실질 판매 가격에 따라서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상품 구매 대금을 결제받는 단계; 및

(f) 상기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에서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부는 상기 중개 서버의 운영비로 분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비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

청구항 6

전자 상거래 중개 서버에서 수행되는 전자상거래 중개 방법으로서,

(a) 복수의 상품 판매자 단말들로부터 각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수신하고, 기본 광고비와 추가 광고비를 포함하는 최종 광고비를 지불받는 단계;

(c) 구매자 단말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면, 해당 검색어에 대응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설정한 광고를 상기 구매자 단말로 출력하는 단계;

(d) 상기 구매자 단말에 광고가 출력된 모든 판매자들이 제공한 기본 광고비의 합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기본 할인금)과, 각 판매자의 추가 광고비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추가 할인금)을 합산한 광고비 할인금을 반영한 각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격을 상기 구매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e) 상기 실질 판매 가격에 따라서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상품 구매 대금을 결제받는 단계; 및

(f) 상기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에서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비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각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중개 서버에 등록하고, 기본 광고비와 추가 광고비를 포함하는 최종 광고비를 상기 중개 서버로 지불하는 복수의 상품 판매자 단말;

구매자 단말로부터 상품 검색어를 수신하면, 모든 판매자들이 제공한 기본 광고비의 합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기본 할인금)과, 각 판매자의 추가 광고비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추가 할인금)을 합산한 광고비 할인금을 반영한 각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격을 상기 구매자 단말로 제공하며, 상기 구매자 단말과 연동하여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실질 판매 가격을 결제받아 광고비 할인금과 함께 상품 대금으로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중개 서버; 및

상기 중개 서버로 상품 검색어를 전송하고, 상기 중개 서버로부터 상품 검색어에 대응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 판매자들의 실질 판매가를 제공받고, 상기 중개 서버와 연동하여, 선택한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를 결제하는 구매자 단말을 포함하고,

상기 구매자 단말은 사용자가 검색한 상품에 대해서 사전에 설정된 보증금을 선결제하고,

상기 중개 서버는 보증금을 선결제한 구매자에 대해서만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개 서버는

상기 구매자 단말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상기 상품 판매자 단말들이 지급한 최종 광고비를 상품 판매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시스템.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 단말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상기 중개 서버는 상기 상품 판매자 단말들이 설정한 최종 광고비를 상품 판매자들에게 분배하고, 상기 보증금을 각 상품 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의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단계를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시스템.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개 서버는

상기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에서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모든 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시스템.

청구항 12

각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중개 서버에 등록하고, 기본 광고비와 추가 광고비를 포함하는 최종 광고비를 상기 중개 서버로 지불하는 복수의 상품 판매자 단말;

구매자 단말로부터 상품 검색어를 수신하면, 모든 판매자들이 제공한 기본 광고비의 합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기본 할인금)과, 각 판매자의 추가 광고비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추가 할인금)을 합산한 광고비 할인금을 반영한 각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격을 상기 구매자 단말로 제공하며, 상기 구매자 단말과 연동하여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실질 판매 가격을 결제받아 광고비 할인금과 함께 상품 대금으로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중개 서버; 및

상기 중개 서버로 상품 검색어를 전송하고, 상기 중개 서버로부터 상품 검색어에 대응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 판매자들의 실질 판매가를 제공받고, 상기 중개 서버와 연동하여, 선택한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를 결제하는 구매자 단말을 포함하고,

상기 중개 서버는

상기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에서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부는 상기 중개 서버의 운영비로 분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비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시스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각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중개 서버에 등록하고, 기본 광고비와 추가 광고비를 포함하는 최종 광고비를 상기 중개 서버로 지불하는 복수의 상품 판매자 단말;

구매자 단말로부터 상품 검색어를 수신하면, 모든 판매자들이 제공한 기본 광고비의 합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기본 할인금)과, 각 판매자의 추가 광고비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추가 할인금)을 합산한 광고비 할인금을 반영한 각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격을 상기 구매자 단말로 제공하며, 상기 구매자 단말과 연동하여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실질 판매 가격을 결제받아 광고비 할인금과 함께 상품 대금으로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중개 서버; 및

상기 중개 서버로 상품 검색어를 전송하고, 상기 중개 서버로부터 상품 검색어에 대응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 판매자들의 실질 판매가를 제공받고, 상기 중개 서버와 연동하여, 선택한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를 결제하는 구매자 단말을 포함하고,

상기 중개 서버는

상기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에서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비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시스템.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0002]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매매하던 전통적인상거래 방식은 쇠퇴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매매하는 전자 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0003] 종래의 전자 상거래 방식은 상품의 판매자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웹 사이트를 만들고, 해당 웹 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 또는 트래픽이 많은 사이트들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거나,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배너 광고 방식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 방식이므로 구매자들의 클릭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광고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0004] 한편, 구매자가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해당 검색어에 대응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웹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 보여주는 키워드 광고의 경우, 구매자의 클릭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과, 검색결과를 클릭하여 구매자가 광고주의 웹 사이트에 방문한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키워드 광고 역시, 구매자의 상품 구매와 무관하게 광고비가 지속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0005] 또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입장에서도, 상품 판매자들이 지불하는 광고비는 상품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품의 가격을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기존의 온라인상의 상품 판매 방식이 판매자가 확정된 상품 판매 가격을 제시하면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여 최저가의 상품을 검색하여 최저가로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 이외에는, 상품 가격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상품 판매자들이 실제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에게 직접 광고를 수행하여 광고 비용을 절감하고, 절감된 광고 비용을 구매자에게 직접 지불함으로써, 판매자 입장에서는 광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판매 가능성을 높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도록 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 중개 방법은, (a) 복수의 상품 판매자 단말들로부터 각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수신하고, 기본 광고비와 추가 광고비를 포함하는 최종 광고비를 지불받는 단계; (c) 구매자 단말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면, 해당 검색어에 대응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설정한 광고를 상기 구매자 단말로 출력하는 단계; (d) 상기 구매자 단말에 광고가 출력된 모든 판매자들이 제공한 기본 광고비의 합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기본 할인금)과, 각 판매자의 추가 광고비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추가 할인금)을 합산한 광고비 할인금을 반영한 각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격을 상기 구매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및 (e) 상기 실질 판매 가격에 따라서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상품 구매 대금을 결제받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8] 또한, 상기 전자상거래 중개 방법은,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구매자 단말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f) 상기 상품 판매자 단말들이 지급한 최종 광고비를 상품 판매자들에게 분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09] 또한, 상기 전자상거래 중개 방법은, (f) 상기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에서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비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10] 또한, 상기 전자상거래 중개 방법은, (f) 상기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에서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모든 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11] 또한, 상기 전자상거래 중개 방법은, (f) 상기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에서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제외한 나

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부는 상기 중개 서버의 운영비로 분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비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12] 또한, 상기 전자상거래 중개 방법은, 상기 (a) 단계와 상기 (c) 단계 사이에, (b) 구매자가 상기 (a) 단계에서 사용자가 검색한 상품에 대해서 사전에 설정된 보증금으로 선결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c) 내지 (e) 단계는 보증금을 선결제한 구매자에 대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0013] 또한, 상기 전자상거래 중개 방법은,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구매자 단말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f) 상기 상품 판매자 단말들이 설정한 최종 광고비를 상품 판매자들에게 분배하고, 상기 보증금을 각 상품 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의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14] 한편,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 중개 시스템은, 각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중개 서버에 등록하고, 기본 광고비와 추가 광고비를 포함하는 최종 광고비를 상기 중개 서버로 지불하는 복수의 상품 판매자 단말; 구매자 단말로부터 상품 검색어를 수신하면, 모든 판매자들이 제공한 기본 광고비의 합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기본 할인금)과, 각 판매자의 추가 광고비에 대응되는 소정의 금액(추가 할인금)을 합산한 광고비 할인금을 반영한 각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격을 상기 구매자 단말로 제공하며, 상기 구매자 단말과 연동하여 상기 구매자 단말로부터 실질 판매 가격을 결제받아 광고비 할인금과 함께 상품 대금으로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중개 서버; 및 상기 중개 서버로 상품 검색어를 전송하고, 상기 중개 서버로부터 상품 검색어에 대응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 판매자들의 실질 판매가를 제공받고, 상기 중개 서버와 연동하여, 선택한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를 결제하는 구매자 단말을 포함한다.

[0015] 또한, 상기 중개 서버는, 상기 구매자 단말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상기 상품 판매자 단말들이 지급한 최종 광고비를 상품 판매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

[0016] 또한, 상기 중개 서버는, 상기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에서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비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에 비례하여 분배할 수 있다.

[0017] 또한, 상기 중개 서버는, 상기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에서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모든 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에 비례하여 분배할 수 있다.

[0018] 또한, 상기 중개 서버는, 상기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에서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부는 상기 중개 서버의 운영비로 분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비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에 비례하여 분배할 수 있다.

[0019] 또한, 상기 구매자 단말은 사용자가 검색한 상품에 대해서 사전에 설정된 보증금을 선결제하고, 상기 중개 서버는 보증금을 선결제한 구매자에 대해서만 상기 광고비 할인금을 지원할 수 있다.

[0020] 또한, 상기 구매자 단말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상기 중개 서버는 상기 상품 판매자 단말들이 설정한 최종 광고비를 상품 판매자들에게 분배하고, 상기 보증금을 각 상품 판매자들의 최종 광고비의 비율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21] 본 발명은 상품을 검색한 구매자가 실제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광고비가 지급되도록 구현함으로써,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광고를 행하는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타겟 광고를 수행할 수 있다.

[0022] 또한, 본 발명은 판매자들로 하여금 광고 비용을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구매자는 판매자들이 지급한 광고비의 일정 비율만큼 상품 가격에서 할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되, 보다 많은 광고비를 지불한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보다 많은 할인금을 받도록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판매자들로 하여금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구매자는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3]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및 제 2 실시예에 따른 전체 전자 상거래 중개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0024]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 [0025]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및 제 2 실시예에 따른 전체 전자 상거래 중개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 [0026] 먼저,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중개 시스템은 복수의 판매자 단말(10), 복수의 구매자 단말(30) 및 전자 상거래 중개 서버(20)(이하, "중개 서버(20)"로 약칭함)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 [0027] 먼저, 복수의 판매자 단말(10)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중개 서버(20)에 접속하여,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상품 정보와 광고 정보를 중개 서버(20)로 전송하여 등록한다. 또한, 복수의 판매자 단말(10)은 상품에 대한 일반 상품 판매가와 광고비를 중개 서버(20)로 전송하여 등록한다.
- [0028] 여기서, 상품 정보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 원산지, 크기, 중량, 사용 방법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광고 정보는 광고 이미지, 동영상 등과 같은 광고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략한 텍스트 소개 정보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 [0029] 또한, 상품 판매가는 각 판매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 가격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한 복수의 판매자의 판매가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광고비는 각 판매자가 구매자가 상품을 검색할 때 자신의 광고를 노출할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광고비가 높을수록 판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 [0030] 이 때, 광고비는 구매자가 검색을 할 때마다 지불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정의된 금액을 중개 서버(20)에 예치하고, 추후에 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31] 한편, 복수의 판매자 단말(10)은 구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 중개 서버(20)로부터 상품 대금을 지급 받는다. 이 때, 상품 대금은 후술하는 실질 구매가와, 후술하는 기본 할인금, 및 추가 할인금을 합한 금액이다.
- [0032] 또한, 복수의 판매자 단말(10)은 광고비를 지급한 상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품 검색에 대한 광고비용을 반환받는다.
- [0033] 상기한 광고비 지급 및 반환은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마다 즉시 수행될 수도 있으나, 일정한 시간 단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34] 한편, 구매자 단말(30)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중개 서버(20)에 접속하여 상품을 검색하고, 결제를 수행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특히, 구매자 단말(30)은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응되는 검색어를 중개 서버(20)로 전송하고, 중개 서버(20)로부터 각 판매자의 광고와 각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를 제공받아, 판매자를 선택하여 결제를 수행함으로써 상품을 구매한다.
- [0035] 중개 서버(20)는 상품 등록부(21), 광고 등록부(23), 실질 판매가 계산부(27), 정산부(25), 및 결제부(29)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 [0036] 먼저, 상품 등록부(21)는 판매자 단말(10)로부터 상술한 바와 같은 상품 정보와 상품 판매가를 수신하여 내부에 등록하고 구매자 단말(30)의 검색 요청에 따라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품 판매가를 실질 판매가 계산부(27)로 출력한다.
- [0037] 광고 등록부(23)는 판매자 단말(10)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상술한 바와 같은 광고 정보와 광고비를 수신하여 등록하고 구매자 단말(30)의 검색 요청에 따라서 광고 데이터를 구매자 단말(30)로 제공하는 한편, 광고비를 실

질 판매가 계산부(27)로 출력한다.

- [0038] 실질 판매가 계산부(27)는 상품 등록부(21)로부터 입력된 상품 판매가와 광고 등록부(23)로부터 입력된 광고비에 따라서 각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를 계산하여 상품을 검색한 구매자 단말(30)로 제공한다.
- [0039] 이하에서, 실질 판매가에 대해서 설명하면, 각 판매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상품 판매가격과 자신이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광고하기 위해서 지불할 광고비를 설정한다.
- [0040] 광고비는 기본 광고비와 추가 광고비로 구성되는데, 기본 광고비는 광고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광고비이고, 추가 광고비는 판매자가 설정한 설정한 광고비에서 기본 광고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 [0041]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광고 서버는 광고를 수행한 모든 판매자들의 광고비에서 기본 광고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에 대해서 사전에 정의된 비율 만큼의 금액을 할인금(기본 할인금)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광고 서버는 구매자가 선택한 판매자의 추가 광고비에 대해서 사전에 정의된 비율 만큼의 금액을 할인금(추가 할인금)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 [0042] 이러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질 판매가 계산부(27)는 각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가에서 기본 할인금을 차감하고, 각 판매자들의 추가 광고비에 따른 추가 할인금을 차감하여 실제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 실질 판매가를 계산한다.
- [0043] 아래의 표 1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판매자 1 내지 판매자 4가 스마트폰을 판매함에 있어서, 각 판매자의 상품 A 내지 D의 판매 가격과 광고비가 다음의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가정한다. 단, 광고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로 지불해야 하는 기본 광고비는 1,000원이고, 기본 할인금 및 추가 할인금은 모두 기본 광고비 및 추가 광고비의 80%라고 가정한다.

표 1

판매자	상품	판매가	광고비	추가 할인금	광고비 할인금	실질 판매가
1	A	50,000원	1,000원	0원	3,200원	46,800원
2	B	50,000원	2,000원	800원	4,000원	46,000원
3	C	50,000원	3,000원	1,600원	4,800원	45,200원
4	D	50,000원	4,000원	2,400원	5,600원	44,400원

- [0045] 그러면, 기본 할인금은 해당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수행한 모든 판매자들의 기본 광고비의 80%의 합이므로, 기본 광고비 1000원의 80%인 800원에 4명을 곱하면 3,200원이 된다.
- [0046] 한편, 추가 할인금은 각 판매자별로 계산되는데, 각 판매자가 지불한 광고비에서 기본 광고비를 차감한 추가 광고비 금액의 80%로 계산된다. 따라서, 판매자 1이 제공하는 추가 할인금은 0이 되고, 판매자 2가 제공하는 추가 할인금은 최종 광고비(2,000원)에서 기본 광고비(1,000원)를 차감하고, 여기에 80%를 계산하면 800원이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판매자 3이 제공하는 추가 할인금은 1,600원, 판매자 4가 제공하는 추가 할인금은 2,400원이 된다.
- [0047]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판매자 1 내지 4 중 어떤 판매자를 선택하더라도 기본 할인금을 중개 서버(20)로부터 제공받게 되며, 어떤 판매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추가 할인금을 제공받게 된다.
- [0048] 실질 판매가 계산부(27)는 각 판매자의 상품 가격에서 기본 할인금과 각 판매자의 추가 광고비로부터 발생한 추가 할인금을 감산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인 실질 판매가를 계산하여 구매자 단말(30)로 제공한다.
- [0049] 상기 표 1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를 동일한 50,000원으로 설정하였고, 광고비를 많이 지출한 판매자일수록 실질 판매가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0050]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판매자들이 많을수록 기본 할인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광고비를 가장 많이 지급한 판매자를 선택하면 추가 할인금을 더 많이 제공받음으로써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물론, 각 판매자마다 상품 판매가가 달라지면 실질 판매가에도 변동이 발생함은 물론이다.
- [0051] 결제부(29)는 판매자 단말(10)과 연동하여 판매자 단말(10)들이 지불하는 광고비를 결제한다. 또한, 결제부(29)는 구매자 단말(30)과 연동하여 구매자 단말(30)이 선택한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에 대한 결제를 수행한다. 결

제를 수행하는 기능은 일반적인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결제 기능과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결제부(29)는 구매자의 결제 사실(즉, 구매 사실) 뿐만 아니라, 비구매 사실도 정산부(25)로 통지한다.

[0052] 정산부(25)는 결제부(29)로부터 상품의 판매 여부 및 어떤 판매자의 상품이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입력받고, 광고 등록부(23)로부터 어떤 판매자가 얼마만큼의 광고비를 지불하였는지를 입력받아, 판매자에게는 상품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자들이 지급한 광고비를 정산한다.

[0053] 먼저, 구매자가 상품 검색만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정산은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는 모두 판매자들에게 반환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게되어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54] 한편,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 정산부(25)는 구매자가 결제한 실질 판매가와 할인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상기 표 1을 참조하여 설명한 예에서, 구매자가 판매자 4의 상품 D를 구매한 경우에, 구매자는 44,400원을 결제하였고, 정산부(25)는 44,400원과 할인금 5,600원을 합산한 50,000원을 판매자 4에게 지급하게 된다.

[0055] 한편, 정산부(25)는 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를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산하게 된다.

[0056] 첫 번째 정산 방안은, 전체 광고비(10,000원)에서 구매자에게 지급된 할인금(5,600원)을 제외한 금액(4,400원)에 대해서 중개 서버(20)의 중개 수수료로서 정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할인 금액을 제외한 금액(4,400원)에서 일정 비율(예컨대, 전에 광고비 합의 20%인 2,000원)은 중개 서버(20)의 중개 수수료로서 정산하고 나머지(2,400원)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비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최종 광고비 또는 추가 광고비)의 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 때, 광고비를 정산받는 판매자에는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도 포함시켜, 판매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매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0057] 이 밖에, 기본 광고비의 합(4,000원)에서 기본 할인금(3,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800원)은 중개 서버(20)의 운영 수수료로서 정산하고, 전체 추가 광고비(6,000원)에서 구매자에게 지급된 추가 할인금(2,400원)을 제한 나머지 추가 광고비(3,600원)에 대해서 비판매자들이 지불한 광고비(최종 광고비 또는 추가 광고비 비율에 따라서 추가 광고비를 분배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상품 판매자까지 비판매자들에 포함시켜 추가 광고비를 정산할 수도 있다.

[0058] 이 경우, 정산부(25)의 정산은 실시간으로 수행될 수도 있으나, 일정한 시간 주기로, 복수의 구매 건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59] 지금까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중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중개 시스템은 구매자가 구매 보증금을 결제한 경우에만 상술한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구매 할인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0060] 구체적으로, 중개 서버(20)는 구매자가 광고 할인금 구매 모드를 요청하면, 구매자에게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가의 평균 가격에 대해서 사전에 정의된 비율 만큼의 금액(예컨대 10%)을 구매 보증금을 선결제 하도록 요청하고, 구매 보증금이 선결제된 구매자에 대해서 상술한 제 1 실시예와 동일한 전자 상거래 중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다.

[0061] 이 경우, 구매자가 변심하여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 보증금은 구매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광고에 참여한 판매자들에게 분배되며, 따라서, 구매 보증금을 선결제한 구매자는 그 만큼 구매 의지가 강하므로, 더 많은 판매자들이 해당 구매자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므로, 기본 할인금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실질 판매가가 낮아져서, 구매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의 보증금은 광고비와 합산되어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다.

[0062]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0063] 이하에서는,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을 설명한다. 다만, 도 2에 도시된 전자상거래 중개 방법은 도 1에 도시된 전자상거래 중개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각 단계

에서 수행되는 기능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 [0064] 먼저, 상품 판매자 단말(10)은 중개 서버(20)로 상품 정보, 상품 판매가, 광고 데이터 및 최종 광고비를 전송하고(S202), 중개 서버(20)는 상품 판매자 단말(10)로부터 수신된 정보들을 등록한다(S204).
- [0065] 한편, 중개 서버(20)가 구매자 단말(30)로부터 상품 검색어를 수신하면, 사전에 등록된 각 판매자의 광고 리스트를 구매자 단말(30)로 전송하여 출력하고(S234), 광고 할인금을 반영한 시릴 판매가를 구매자 단말(30)로 전송하여 표시한다(S236). 실질 판매가를 계산하는 과정은 표 1을 참조하여 상술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 [0066] 각 판매자의 광고 및 실질 판매가를 수신한 구매자 단말(30)은 판매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비구매를 나타내는 선택 정보를 중개 서버(20)로 전송하고, 중개 서버(20)는 구매자 단말(30)로부터 수신한 선택 정보를 조사한다(S242).
- [0067] 제 S242 단계에서 조사한 결과, 구매자가 비구매를 선택한 경우에, 판매자들이 지급한 광고비들은 판매자들에게 반환되고 정산되어 절차는 종료된다(S244).
- [0068] 제 S242 단계에서 조사한 결과, 구매자가 특정 판매자를 선택하여 구매를 결정하였다면, 중개 서버(20)는 구매자 단말(30)로 선택된 판매자의 실질 판매가의 결제를 요청하고, 구매자 단말(30)은 요청된 실질 구매가를 결제한다(S250).
- [0069] 결제가 완료되면, 중개 서버(20)는 구매자가 선택한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결제한 실질 판매가, 기본 할인금, 및 추가 할인금을 합산한 금액을 상품 대금으로 지급한다(S260).
- [0070] 그 후, 중개 서버(20)는 잔여 광고비를 정산한다(S270). 광고비를 정산하는 방식은 상술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 [0071] 지금까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을 설명하였다.
- [0072]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는 구매자가 보다 많은 판매자로 하여금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매 보증금을 선결제하는 방식이다.
- [0073] 도 3을 참조하면, 제 2 실시예에서, 도 2에 도시된 제 S202 단계 및 제 S204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정보, 상품 판매가, 광고 및 광고비가 등록되고, 중개 서버(20)가 구매자 단말(30)로부터 상품 검색어를 수신하면(S212), 중개 서버(20)는 일반 상품 검색 결과를 구매자 단말(30)로 제공한다(S214). 이 때, 일반 상품 검색 결과란, 광고비로부터 할인금을 지원하지 않는 광고들의 검색 결과를 의미한다.
- [0074] 한편, 구매자 단말(30)은 중개 서버(20)로 광고 할인금 구매 모드를 신청하고(S216), 요청을 수신한 중개 서버(20)는 구매 보증금 선결제를 요청한다(S220). 이 때, 구매 보증금은 구매자 단말(30)이 검색한 상품에 대해서 사전에 설정된 금액으로서, 중개 서버(20)는 사전에 각 상품별로 구매 보증금을 설정하고, 구매자는 구매 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0075] 선결제 요청을 수신한 구매자 단말(30)은 구매 보증금을 결제하고(S224), 이 후의 과정은 도 2의 S234 단계부터 수행되는 것과 동일하다. 즉, 구매 보증금을 선결제한 구매자 단말(30)로는 일반 상품 검색 결과가 아닌, 제 1 실시예와 같은 광고비로서 할인금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중개 방법에 참여하는 판매자들의 상품 광고 및 실질 판매가가 보여지게 된다.
- [0076] 이 때, 구매자 단말(30)은 중개 서버(20)가 설정한 구매 보증금을 초과하는 구매 보증금을 결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 구매 의사를 표현하여 더 많은 상품 판매자들이 광고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실질 판매가를 더 낮출 수 있다.
- [0077] 구매 보증금 결제한 이후의 과정은, 구매자가 비구매시 구매 보증금을 포함하여 제 S270 단계에서 정산이 수행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 [0078]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라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0079]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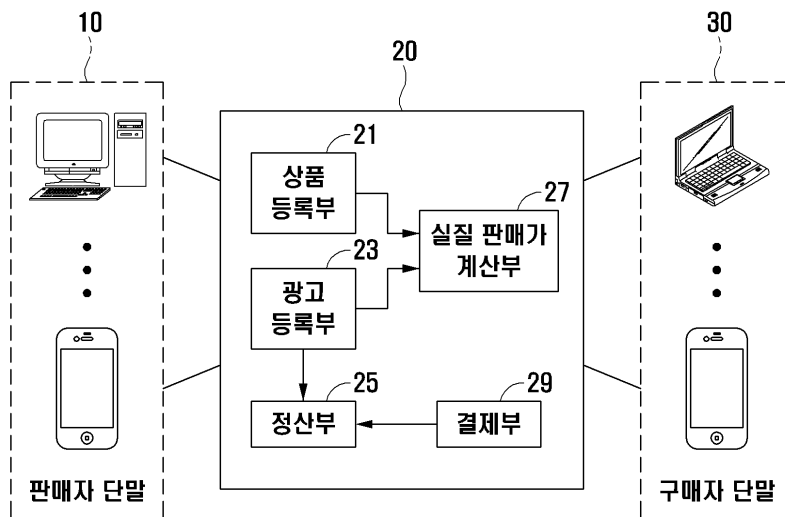
부호의 설명

[0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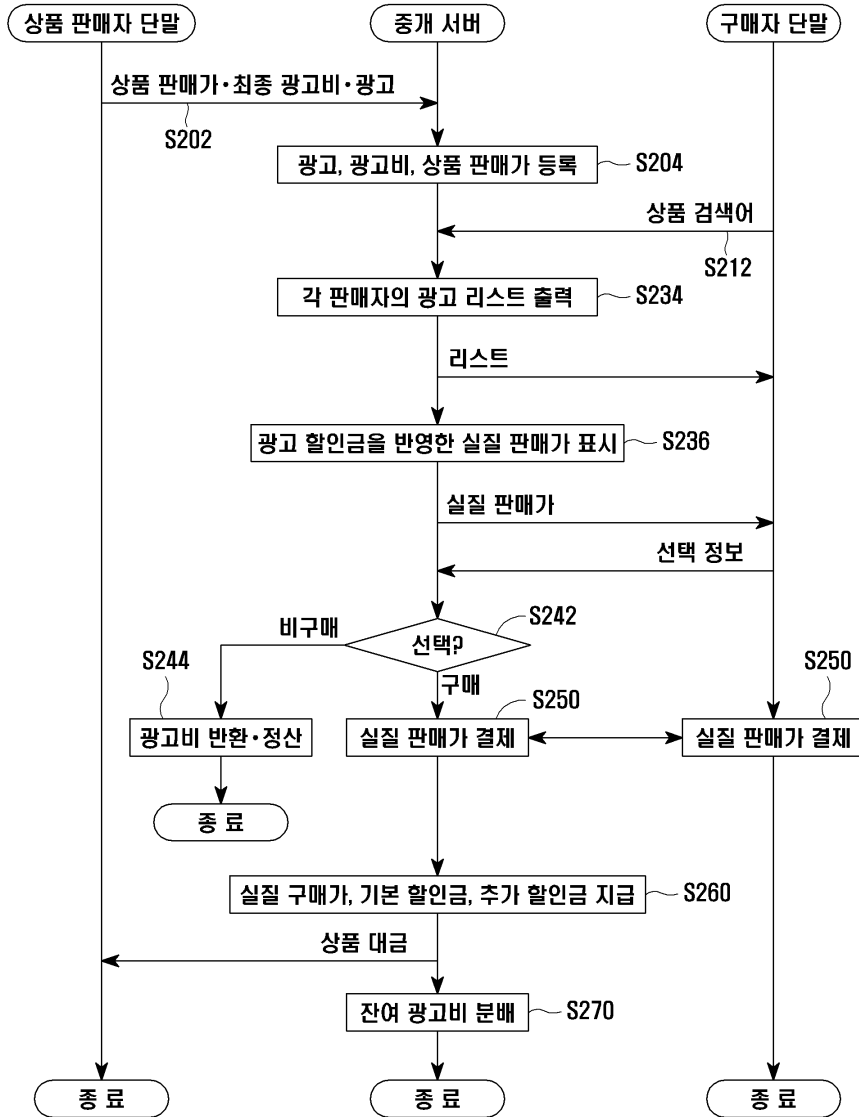
- 10 판매자 단말
- 20 중개 서버
- 21 상품 등록부
- 23 광고 등록부
- 25 정산부
- 27 실질 판매가 계산부
- 29 결제부
- 30 구매자 단말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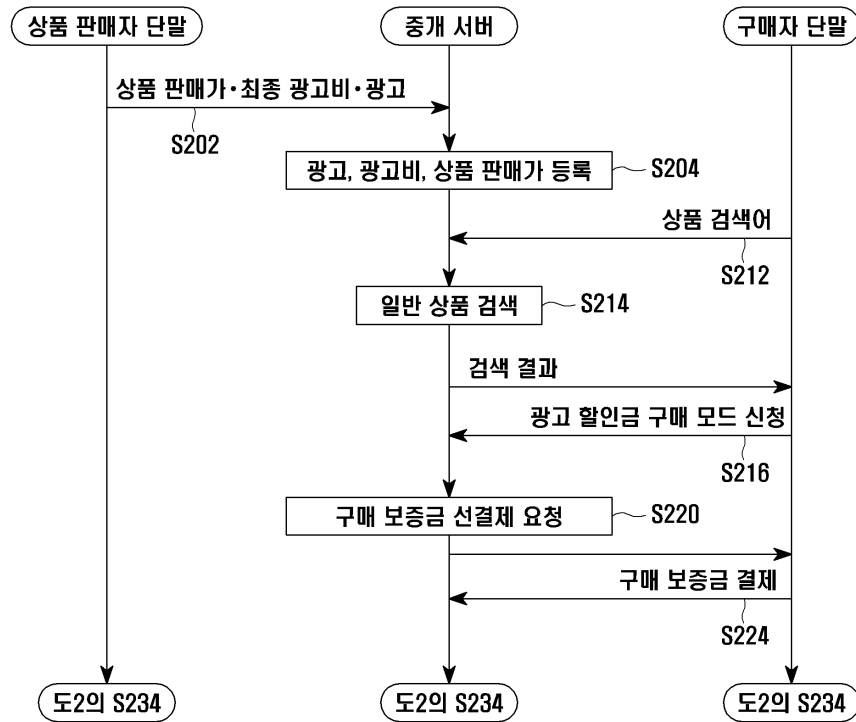
도면1



도면2



도면3



【심사관 직권보정사항】

【직권보정 1】

【보정항목】 청구범위

【보정세부항목】 청구항 14의 첫번째 줄

【변경진】

각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중개 서버에 등록하고,

【변경후】

각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중개 서버에 등록하고,

【직권보정 2】

【보정항목】 청구범위

【보정세부항목】 청구항 12의 첫번째 줄

【변경진】

각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중개 서버에 등록하고,

【변경후】

각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가를 중개 서버에 등록하고,